

제주지방법원 2022. 12. 9 선고 2022가단510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2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825㎡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1. 12. 6. 접수 제1060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송현경

별지